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검토보고서.....82면
- 심사 결과 보고서.....94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2. 8.(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6.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7.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8.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9.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10.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 12.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 출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2) 주 요 내 용

- 예산규모 : 23,430백만원
 - . 일반회계 : 23,100백만원
 - . 특별회계 : 330백만원

※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 부 서 류

- 2025년도 예산편성기준(기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 12.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 출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2) 주 요 내 용

- 기금예산규모 : 41,625천원
- . 재난관리기금 : 41,625천원

3) 첨 부 서 류

-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폐지이유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발한 새마을소득사업이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됨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9. 1 ~ 9. 20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8176(2025.7.15.)]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새마을행정란을 삭제한다.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새마을팀장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 이유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심산문화테마파크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나.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10조)
- 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라. 심산문화테마파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0450(2025. 9. 5.)]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45697(2025. 9. 12.)]
 - 3) 입법예고 : 2025. 9. 17. ~ 10. 10.(23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산문화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테마파크와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테마파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테마파크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산31-2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제5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테마파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약) ① 이용자는 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도 예약이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③ 관리자는 예약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 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요율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이용료는 온라인 예약 및 결제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예약 및 결제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2. 테마파크 이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테마파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테마파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한다.

④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계약 취소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산문화테마파크 이용료(제5조 관련)

구분 및 용도	사용 기준	단위	금액	비고
전 시 실	1일	m ²	700원	· 대관시간 중 일부 시간을 사용한 경우는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회 의 실	1일	m ²	500원	
강 당 (다목적관)	1일	m ²	500원	

[별표 2]

심산문화테마파크 이용료 감면 요율(제7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0분의 100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성주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우수자원봉사자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100분의 30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성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일 현재 주소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둔 사람	
○ 감면 요율은 테마파크 이용료에만 적용한다. ○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테마파크 예약 시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 3]

심산문화테마파크 이용료 반환(제9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 반환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90% 반환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70% 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50% 반환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20% 반환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테마파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 없이 전액 반환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 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장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5. 9. 17. ~ 2025. 10. 11.)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3089(2025. 11. 11.)]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7872(2025. 7. 3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u>수화</u> 및 점자교육	6. ----- <u>한국수어</u>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 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가족지원과 장애인팀장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선남골프장의 단계적 조성을 위하여 남측9홀 우선 추진을 위한 구역계 축소에 따라,
- 제외된 부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선남골프장 조성사업
- 위 치 :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일원
- 면 적 : 1,112,789㎡ (수도공급시설 포함)
- 체육시설 : 1,106,520㎡ → 572,228㎡ (감. 534,292㎡)

나. 의견청취 내용

- 용도지역 환원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A=470,104㎡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12,789	-	1,112,789	100.0	
계획관리지역	1,081,253	감) 470,104	611,149	54.9	
보전관리지역	31,536	-	31,536	2.9	
농림지역	-	증) 470,104	470,104	42.2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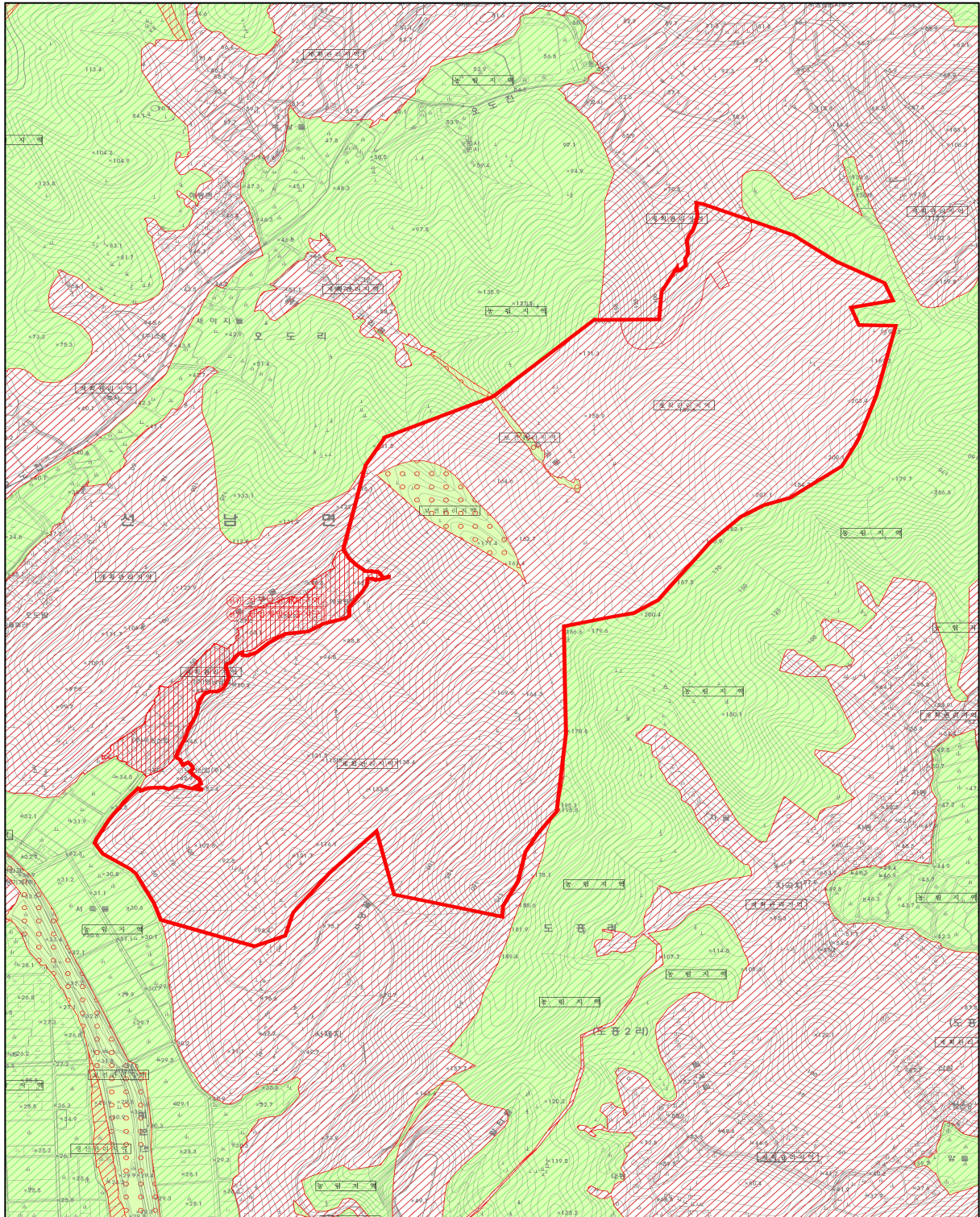
가. 추진경과

- 2013. 5. 16.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 2020. 2. 20. 6차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 2011. ~ 2017. 1~5차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추진
- 2020. 8. 14. ‘선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사업협약 체결
(성주군 ⇔ 대방건설(주))
- 2022. 2. 18.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남측9홀 편입된 군유지 매각 승인)
- 2022. 10. 11. ‘선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 2022. 10. 31. ~ 2024. 12. 24. 사업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
- 2025.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5. 7. 관련부서 협의, 주민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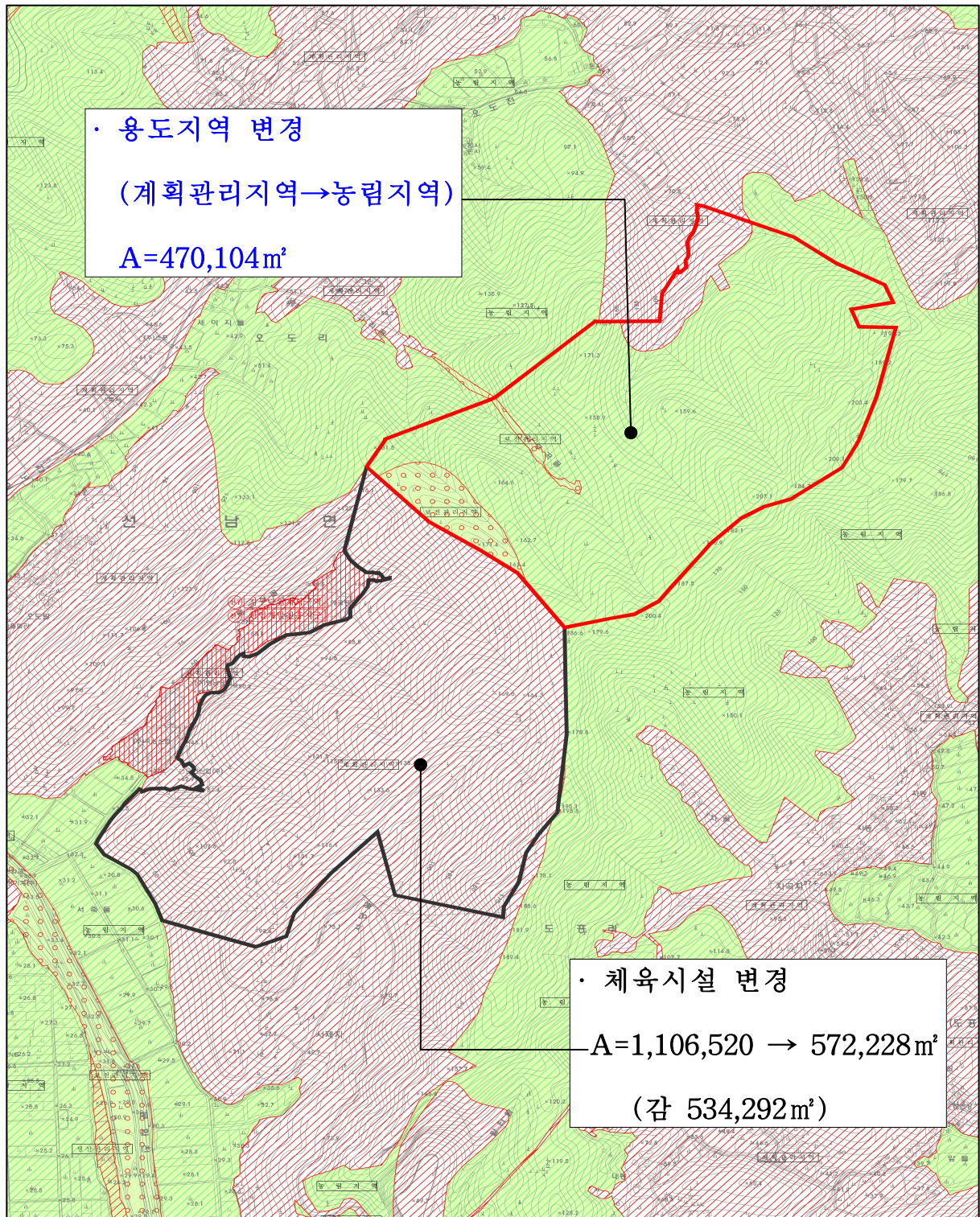
나. 향후 추진계획

- 2025. 12. 군의회 의견청취 및 성주군계획위원회 자문 (성주군)
- 2026. 1. 경북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승인 신청
- 2026. 2. 도 관련부서(기관) 협의 (경상북도)
- 2026. 4.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북도)
- 2026. 5.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고시 (경상북도)

4. 군관리계획 현황 (현재)



5.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참고자료]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변경 토지현황

연 번	행정동	지번	지 목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면적(㎡)			소유자
					계 획 관 리	보 전 관 리	농 림 지 역	
합 계				535,451	33,411	31,936	470,104	
1	오도리	237	임	833		833		신세계**
2	오도리	238	임	803		803		아세아**
3	오도리	669	구	476		476		농림부
4	오도리	산22-1	임	15,273			15,273	대한**
5	오도리	산23	임	97,984		28,257	69,727	대한****
6	오도리	산24	임	91,637			91,637	디에이**
7	오도리	산25	임	63,075	4,432		58,643	성산**
8	오도리	산26	임	35,703	5,411		30,292	전*현
9	오도리	산27-2	임	24,595			24,595	화성*****
10	오도리	산36-2	임	154,017	7,111		146,906	성주군
11	오도리	산36-3	임	21,223	14,573		6,650	수성**
12	오도리	산36-4	임	19,934			19,934	대한**
13	오도리	산36-5	임	1,884	1,884			이*상
14	오도리	산37	임	496			496	이*명
15	오도리	산38	임	1,587			1,587	손*식
16	오도리	산39	임	4,364			4,364	전*현
17	오도리	산80	천	1,567		1,567		국토부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반영
- 노후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기 시행중이나, 자부담율이 높아 지원단지가 적은 상황이므로 군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

- 용어의 단순화 및 명확화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군비 지원율 조정(안 제5조제1항)

: 소요사업비의 60%이하 → 90%이하로 상향 조정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정비(별지 제2호서식)

: 국민권익위원회 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관련사항 : 2026년 당초예산 편성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1153(2025.6.23.)호]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6991(2025.6.23.)호]

마. 성주군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실-9771(2025.8.22.)호]

바. 입법예고 : 2025.8.22. ~ 9.11.(20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60%이하”를 “90%이하”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
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선택기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 현 황	위 치			면 적	m ²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층 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적율	%		지하 층
분쟁조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						
첨부서류						

「성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제5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u>60%이하</u> 로서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대상) ① ----- ----- ----- ----- ----- 90%이하----- -----.
② (생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나.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소요사업비의 “60%이하”에서 “90%이하”로 개정시 연간 52,500천원 정도의 세출 순증가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 도	지원단지	총사업비	지원금액
2022	6개소	197,980천 원	118,704천 원
2023	5개소	176,058천 원	100,902천 원
2024	4개소	118,437천 원	71,047천 원
2025	2개소	105,000천 원	57,000천 원
합 계	17개소	597,475천 원	347,653천 원

※ 4년간 연평균 지원단지 5개소 / 단지당 평균 총사업비 35,000천원

나. 비용증감 : **증52,500천 원**

- 개정 전 지원액 : 21,000천원(총사업비의 60%)×5개소=105,000천원

- 개정 후 지원액 : 31,500천원(총사업비의 90%)×5개소=157,5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사업대상단지를 5개소로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공동주택						
	관리비용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원사업						
	소계(b)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 총 비용(a-b)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군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5. 부대의견

- 경북 내 타지자체에 비해 자체사업에 대한 시군비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군비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작성자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장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및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으로 소방,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 7. 17. 시행) 사항 등을 반영코자 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 유형 전면 개편 : 기반재난 유형 삭제 및 사회재난 유형 신설
- 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불임)
- 다. 예산조치 : 불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0976(2025.9.16.)]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6708(2025.9.18.)]
3) 입법예고 : 2025.10.2. ~ 2025.10.2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통제관: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5.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주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성주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4.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5.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및 실무반 운영 총괄. 다만, 해당 부서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
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군수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 제20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구 분		업무 및 역할
상 황 관 리 총 괄 반	1) 재난대응팀	가) 기상정보 등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 나) 재난방송 송출 요청 다) 재난문자 송출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재난상황 분석 및 대처계획 수립 바) 비상근무 단계 결정 사)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자) 일일상황보고서 및 상황일지 작성·보고 차) 상황판단회의 및 재대본회의 자료 작성·보고 카) 발생현황, 인력·장비 투입 현황 관리 타) 재난지역 인명·재산 피해현황 관리 파) 재난지역 수습현황 관리
	2) 행정지원팀	가)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나)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다)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상황판단회의·재대본회의 주재 바)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도지사 등 주재회의 준비 사)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도지사 등 특별지시사항 전파 아) 주민대피·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차) 위기관리매뉴얼관리시스템 운영 카)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타)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수행
	1) 사회질서유지반	가) 위험지역 순찰 및 출입통제 협조 나) 주민대피 다) 긴급차량 이동 지원
	2) 수색·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현황 관리

협 업 기 능 반		나) 긴급구조기관 지원 다) 접근곤란 예상지역 파악
	3) 시설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인력·장비·자재 지원 -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상수도, 도시개발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등
	4) 통신기능복구반	가)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및 통신기반시설 응급복구 다) 통신 두절지역 긴급통신체계 구축 및 복구
	5) 에너지기능복구반	가) 생활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나)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 및 인력·장비·자재 지원 다) 재난현장 에너지 차단 및 지원(임시수용시설 등)
	6) 의료·방역지원반	가) 입·퇴원환자 현황 관리, 병원별 근무자 배치 나) 응급의료 지원 및 기동의료반 운영 다) 의료·방역 자원 현황 관리 및 지원 라)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마) 감염병 예방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운영 바) 피해자 심리 지원 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지원
	7) 현장환경정비반	가) 환경오염물질 피해상황 관리 및 오염예방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 위한 인력·장비·자재 지원 다) 임시 적환장 운영 및 폐기물 처리 라)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및 처리방법 홍보
	8) 재난자원관리반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응원 다) 재난관리자원 현황 관리
	9) 교통수송대책반	가) 교통통제 및 모니터링 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다)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 조정 라) 교통두절구간 대체교통수단 확보 마) 수송차량·인력·장비 지원

	10) 자원봉사관리반	가) 자원봉사활동 관리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및 지원 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배치 관리 라)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마)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11)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활동 라)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SNS, 홈페이지 등)
	12) 생활안정지원반	가) 이재민 발생상황 관리 및 지원(급식 등) 나) 임시·장기 주거시설 지원 다) 재해구호물자 관리 및 지원 라) 재난구호활동 관리 마) 민원 접수 창구 설치 및 운영 바) 재난지원금 접수 및 지원 사) 의연금품 배분 및 지원 아) 사망·실종자 현황 파악 자) 사망·실종자 장례 및 유족 생활 지원 차) 임시·합동분향소 운영 등
지원반		가)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나) 재난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유형	주관부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안전과 경제교통과
나. 행정안전부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안전과 안전과 안전과 안전과 안전과
다. 환경부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환경과 환경과
라. 산림청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산림과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유형	주관부서
가.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족지원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사무관장기관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안전과
라.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과
마. 행정안전부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과
	2)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4)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재무과
바.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과
사.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과
아.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관광과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관광과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화예술과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소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자.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축산과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건설과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농정과
차. 산업통상자원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기업지원과
카. 보건복지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족지원과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보건소
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보건소
파. 환경부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건설과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환경과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상하수도사업소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상하수도사업소
파. 환경부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환경과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환경과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환경과
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과
거. 국토교통부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건설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너.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더. 여성가족부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
러.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경제교통과
머. 국가유산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버. 산림청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산림과 산림과
--------	--	----------------

비고

1.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주관부서를 정한다.
2. 재난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유형별 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된다.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지휘부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안전과장		
	담 당 관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 상황실 (부서별 1명) · 사무실 (α명) · 현장출동 (β명)	· 상황실 (부서별 1명) · 사무실 (α명) · 현장출동 (β명)
	1) 총괄반	실무반장	과장급 1명	과장급 1명
		가) 재난대응팀	· 재난수습 주관부서	
		나) 행정지원팀	· 안전과	
	2) 협업반	가) 사회질서유지반	· 안전과, 총무새마을과	
		나) 수색·구조·구급반	· 안전과	
		다) 시설응급복구반	·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라) 통신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마) 에너지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의료·방역지원반	· 보건소	
		사) 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사업소, 환경과	
		아) 재난자원관리반	· 안전과	
		자) 교통수송대책반	· 경제교통과	
		차) 자원봉사관리반	· 총무새마을과	
		카) 재난수습홍보반	· 기획예산실	
		타) 생활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3) 지원반		· 미래전략실, 재무과, 민원과 (α+β명) · 읍·면사무소 (α+β명) · 유관기관	

비고

1. 실무반 근무 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태풍	가. 비상1단계	1)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1)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호우·대설	가. 비상1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대설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호우·대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	가. 비상1단계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 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최대 진도 V 이상이 발생한 경우
	나. 비상2단계	1) 지진 관측 결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1) 지진 관측 결과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가. 비상1단계	1) 화산이 분화되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비상2단계	1) 화산이 분화되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화 산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된 경우 2) 화산분출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1) 화산이 분화되어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5. 가 물	가. 비상1단계	1) 가물 예·경보를 통해 기상현황,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물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나. 비상2단계	1) 가물 예·경보를 통해 기상현황,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물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2) 가물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1) 가물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가물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폭 염	가. 비상1단계	1)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폭염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1) 기상특보 중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폭염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7. 한 파	가. 비상1단계	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되어 한파로 인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되어 한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비고

1. 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비상대응 및 수습·복구단계		
지 휘 부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안전과장		
	담 당 관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 상황실 (부서별 1명)	· 사무실 (α명)	· 현장출동 (β명)
	1) 총괄반	· 실무반장	· 담당관	
	가) 재난대응팀	· 재난 수습 주관부서		
	나) 행정지원팀	· 안전과		
	가) 사회질서유지반	· 안전과, 총무새마을과		
		· 안전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2) 협업반	나) 수색·구조·구급반	· 안전과	
		다) 시설응급복구반	· 관광과, 문화예술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라) 통신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마) 에너지기능복구반	· 경제교통과	
		바) 의료·방역지원반	· 보건소	
		사) 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사업소, 환경과	
		아) 재난자원관리반	· 안전과	
		자) 교통수송대책반	· 경제교통과	
		차) 자원봉사관리반	· 총무새마을과	
		카) 재난수습홍보반	· 기획예산실	
		타) 생활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3) 지원반	· 유관기관	· 미래전략실, 재무과, 민원과, · 읍·면사무소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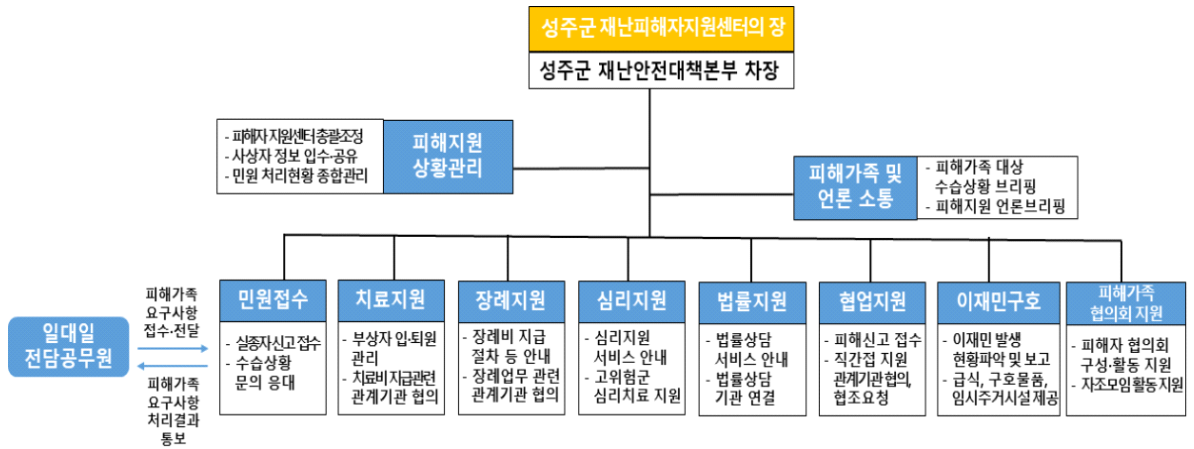
[별표 6]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6조의2제4항 관련)

1. 성주군 재난피해지원센터의 임무

구 분	임 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1)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안전과 안전관리팀장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반영하고, 오탈자를 수정코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붙임)

다. 예산조치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0976(2025.9.16.)]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6709(2025.9.18.)]

3) 입법예고 : 2025.10.2. ~ 2025.10.2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를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따른”을 “따른 재난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조제5호나목”을 “법 제3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를 “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통하여”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주군 부군수”를 “부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군”을 “성주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운영 상”을 “운영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편성”을 “실무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지원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오지마을에”를 “오지에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u>	<u>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u>따른</u>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 ----- ----- ----- ----- <u>따른 재난현장</u> ----- ----- ----- ----- ----- -----.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u>법 제3조제5호나목</u>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성주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4. ----- <u>법 제3조제5호</u> -----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성주군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생략)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

----- 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거쳐

② ----- 부군수-----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 성주군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

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 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생략)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② (생략)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 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 운영상 -----

3.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실무반 편성 -----

-----.

④ -----

-----.

1. ~ 6. (현행과 같음)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지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② (생략)

③ 재난이 오지마을에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⑤ (생략)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성주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오지에서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

<삭 제>

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
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
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칙 <조례 제2060호, 2014.7.31.>

부칙 <조례 제2288호, 2019.3.7.>

제23조(권한의 위임) -----

-----.

1. ~ 4. (현행과 같음)

5. -----

<삭제>

<삭제>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관련법령 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법인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관 공공기관·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안전과 안전관리팀장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폐지 이유

이 조례는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행락객으로부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1990. 5. 10.)되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2018. 12. 27.)에 따라 종량제 시행(1995. 1. 1.)으로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5698(2025.9.12.))

2)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1117(2025.9.19.))

3) 입 법 예 고 : 2025.10.2. ~ 2025.10.2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Ⅲ. 세부 시행지침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사항

- 공원·유원지·관광지·등산로·경기장·해수욕장 등 공공지역은 [붙임4]의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능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은 이용자가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토록 조치
-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은 관리주체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종량제봉투를 무료 지급하거나 자체 수거·처리하는 체계 구축
- 공공지역에는[붙임5]의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에 따라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21. 6. 24.>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자원순환사업소 자원순환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12. 8.(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발한 새마을소득사업이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됨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이 과거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국가·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해당 융자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현황을 반영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2009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폐지로 발생한 특별회계 잉여금이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준치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 이유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심산문화테마파크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나.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10조)
- 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라. 심산문화테마파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1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심산문화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테마파크의 목적, 이용료, 예약·환불 절차, 손해배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탁근거 및 수탁자 선정·감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6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년 2월) 이후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수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용어의 법적·제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선남골프장의 단계적 조성을 위하여 남측 9홀 우선 추진을 위한 구역계 축소에 따라,
- 제외된 부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선남골프장 조성사업
- 위 치 :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일원
- 면 적 : 1,112,789㎡ (수도공급시설 포함)
- 체육시설 : 1,106,520㎡ → 572,228㎡ (감. 534,292㎡)

나. 의견청취 내용

- 용도지역 환원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A=470,104㎡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12,789	-	1,112,789	100.0	
계획관리지역	1,081,253	감) 470,104	611,149	54.9	
보전관리지역	31,536	-	31,536	2.9	
농림지역	-	증) 470,104	470,104	42.2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과

- 2013. 5. 16.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 2020. 2. 20. 6차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 ※ 2011. ~ 2017. 1~5차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추진
- 2020. 8. 14. ‘선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사업협약 체결
(성주군 ⇔ 대방건설(주))
- 2022. 2. 18.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남측9홀 편입된 군유지 매각 승인)
- 2022. 10. 11. ‘선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 2022. 10. 31. ~ 2024. 12. 24. 사업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
- 2025.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5. 7. 관련부서 협의, 주민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나. 향후 추진계획

- 2025. 12. 군의회 의견청취 및 성주군계획위원회 자문 (성주군)
- 2026. 1. 경북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승인 신청
- 2026. 2. 도 관련부서(기관) 협의 (경상북도)
- 2026. 4.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북도)
- 2026. 5.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고시 (경상북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선남골프장 남측 9홀 우선 조성을 위한 구역 축소에 따라, 제외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계획관리지역 470,104m²를 본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복구하는 것은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협약 체결·해지 등 장기간의 추진과정을 거쳐 온바, 금번 용도지역 조정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경상북도 승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치적 조치로 판단되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반영
- 노후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기 시행중이나, 자부담율이 높아 지원단지가 적은 상황이므로 군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정비(안 제3조)

- 용어의 단순화 및 명확화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군비 지원을 조정(안 제5조제1항)

- : 소요사업비의 60%이하 → 90%이하로 상향 조정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정비(별지 제2호서식)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정비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하향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지원 및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및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으로 소방,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 7. 17. 시행) 사항 등을 반영코자 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 유형 전면 개편 : 기반재난 유형 삭제 및 사회재난 유형 신설
- 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등 재난 분류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소방·경찰을 포함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재난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반영하고, 오탈자를 수정코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재난피해자 지원체계의 일원화·체계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이 조례는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행락객으로부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1990. 5. 10.)되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1995. 1. 1)으로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비지정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1. 심사안건

-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 1) 제출일 및 제출자 : 2025. 11. 18. 성주군수
- 2)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4.
- 3) 상정일 : 2025. 11. 24.
- 4) 심사기간 : 2025. 11. 27. ~ 12. 5.(9일간)

3.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일괄 제안 설명자 기획예산실장 황희성(별첨 1 제안 설명서 참조)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생략

- 1) 수석전문위원 김미순 (별첨 2 검토 보고서 참조)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자와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별첨 3 수정조서 참조)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

□ 총 관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수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나머지는 원안과 같음.

(단위:천원)

회 계 별	단체장 제출 예산안	수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본 예산액	증 액	감 액		
합 계	652,670,000	2,657,500 (예비비)	△2,657,500	652,670,000	
일 반 회 계	588,100,000	2,657,500 (예비비)	△2,657,500	588,100,000	
특 별 회 계	64,570,000	-	-	64,570,000	

□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수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나머지는 원안과 같음.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요구액	수정내역		비고
	부기명	통계목		증 액	감 액	
계		16건		2,657,500 (예비비)	△2,657,500	
기획예산실	308-13	○군정시책및공지사향홍보	600,000	200,000 (예비비)	200,000	
미래전략실	301-14	○정착지원사업	1,500,000	400,000 (예비비)	400,000	
문화예술과	201-03	○기획초청공연 (뮤지컬,음악회,연극,무용등)	400,000	200,000 (예비비)	200,000	
환경과	401-01	○성주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개선사업 (악취기술진단)	63,000	63,000 (예비비)	63,000	
환경과	402-02	○전기자동차등보급	1,736,250	700,000 (예비비)	700,000	
농정과	206-01	○액비안정화약품구입(소포제)	42,000	22,000 (예비비)	22,000	
축산과	301-14	○살처분보상금지원	37,500	27,500 (예비비)	27,500	
도시계획과	401-01	○취락지구정비사업(취락지구기반시설건급정비비)	25,000	25,000 (예비비)	25,000	
도시계획과	401-01	○성신원정비사업	4,490,000	300,000 (예비비)	300,000	
안전과	401-01	○대장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4,200,000	500,000 (예비비)	500,000	
의회사무과	202-04	○의회선진화관련해외연수	8,000	8,000 (예비비)	8,000	
의회사무과	202-04	○의장및의원해외연수수행	12,000	12,000 (예비비)	12,000	
의회사무과	205-04	○의정활동국외여비	32,000	32,000 (예비비)	32,000	
농업기술센터	402-02	○지역특화형신선농산물수출단지조성	200,000	100,000 (예비비)	100,000	
농업기술센터	402-01	○기후변화대응과수스마트관수시스템구축시범	28,000	28,000 (예비비)	28,000	
자원순환사업소	401-01	○노면주행유도선및안내판설치	40,000	40,000 (예비비)	40,000	